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2026 Special Seminar 요지

2025. 6. 26.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연구원 김보민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6월 18일 17:00
- 장소: 특허법원 5층 대회의실 (온라인 Zoom 동시 개최)

2. 참석자 및 대담자

가. 대담자

- 대릴 림(Daryl Lim) 교수(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디킨슨 로스쿨 H. Laddie Montague Jr. 석좌)
- 김영기 고법판사(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이지영 고법판사

나. 참석자

- 한규현 특허법원장(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센터장)
- 정택수 수석판사(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 특허법원 법관 및 직원
-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연구원 및 해외 인턴
- KDI School MIPD 과정에 재학 중인 IP 전공 외국변호사, 대학원생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전문가

II. 대담

1. 대담 주요 내용

가. 한국과 AI 혁신

- Lim 교수는 한국이 로봇공학·제조·반도체 역량과 우수한 창의적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퍼지컬 AI(physical AI)' 기반의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 평가함.
- 최근 젠슨 황과 샘 올트먼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국은 차세대 글로벌 AI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힘.

나. 국제 분쟁해결: 중재·조정과 WIPO 연계

-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디킨슨 로스쿨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WIPO 중재조정센터와 운영해 온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로스쿨은 정부나 특정 당사자와 달리 **중립적 주체**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으는 데 강점이 있다고 강조함.
- 법적 분쟁처럼 보이는 사안도 실제로는 라이선스 조건이나 지리적 범위 등을 둘러싼 **상업적 분쟁**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조정·중재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비공식 조정으로 쟁점을 좁히는 것이 효과적임.
- 특허법원이 검토 중인 **WIPO 중재조정센터와의 MOU체결(사건 조정 회부)** 구상에 대해, WIPO는 신뢰받는 중립적 국제기구이며 '지식재산권은 이론상 국내적이지만 실무상 국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협력이라고 평가함.
- 다만, 조정·중재에 적합한 사건을 초기에 선별하고 공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이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관건이라고 조언하며, WIPO를 중심에 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구조를 제안함.

다. 반독점 · 저작권 · 생성형 AI

- 미국에서 가장 이른 AI · IP 분쟁이 나온 배경으로 큰 시장과 활발한 소송문화를 들며 주요 판결을 소개함.
- Thomson Reuters 사건은 시장 대체(market substitution) 요소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일부 다른 사건에서는 모델 학습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인정되었음(원고가 산출물의 침해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 AI 학습의 전 과정(소싱→스테킹→스토어링)을 따지는 **출처(provenance)** 문제가 매우 중요함.
- 공정이용은 AI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과시키는 ‘여권’이 아니므로, **각 단계마다 체크포인트를 두어** 이용 권한과 라이선스 범위를 점검해야 함.
- Apache 2.0, Creative Commons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라이선서가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유효함.
- 이에 따라 다수의 데이터셋과 라이선스를 다룰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처리(clearing) 메커니즘**이 필요함.
- 과거 BitTorrent(불법 다운로드)에서 Spotify(스트리밍 라이선스) 모델로 이행한 것처럼, AI 분야도 결국 라이선싱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주요국 공정이용 법실무를 비교함.
- **미국**: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하며, 비(非)시장대체 요소가 있으면 변형적 이용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함.
- **유럽**: 사전적 · 규제 중심 접근을 취함(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예외, DMA · DSA · EU AI법). 다만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사전 규제는 준수 여부 판단이 어려워 일부는 후퇴하기도 함.
- **싱가포르**: 미국식 공정이용과 상업적 TDM(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모두 두어

명확성과 실효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함.

- 김영기 고법판사는 한국도 4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라.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 반독점

- Lim 교수는 영국 법원(Unwired Planet, InterDigital 등)은 **글로벌 FRAND 조건**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통합특허법원(UPC)은 국가별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원스톱’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UPC 간의 긴장 관계,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및 이에 대응하는 **대항명령**의 확산, 홀드업(hold-up) 및 홀드아웃(hold-out) 문제 등이 발생함.
- 한국이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판례가 아닌 **입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함.
- 모든 SEP 사건이 반독점 사건은 아니며, 실제 **시장지배력과 그 남용(배제효과)**이 있을 때만 반독점으로 다루어야 함(예: 미국 FTC v. Qualcomm).
- 사법부는 제도적으로 외부의 견제나 감시를 가장 덜 받는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 겸손(judicial humility)’이 중요함.
- 이지영 고법판사는 현행 한국법상 가처분을 통한 글로벌 FRAND 요율 설정은 어렵다고 보았음.
- 가처분은 잠정적 구제수단이어서 존속기간 · 지역 · 과거 · 장래 로열티 등 핵심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음.
- 다만 양 당사자가 사전 합의로 법원에 글로벌 요율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함.
- 최근 다수의 판사가 모여 SEP · FRAND 연구 모임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임.

마. 글로벌 IP 포럼과 특허법원의 위상

-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10주년)가 한국 제도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정보를 나누고 답을 찾는 장으로 진화했으며, 복잡한 IP 쟁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국제적 교류가 법원의 큰 강점이 된다고 설명함.
- Lim 교수는 한국 특허법원이 **표준심리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설계한 점을 들어 매우 당사자 중심적이라고 호평함. 영문 판결 요지 공개를 확대하고 SNS 등 새로운 전파 수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김영기 고법판사는 특허법원은 이미 주요 판결을 영문 번역해 WIPO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Lim 교수가 제안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힘.

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 UPC는 유럽 내 ‘원스톱 분쟁해결지’로서 높은 매력을 가지며, 이는 자동 금지명령 부재와 높은 소송비용으로 매력이 감소한 미국과 대비됨. 다만 현재 UPC 사건의 약 60%가 독일에서 처리되어 특정 국가가 대륙 전체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 간 재조정이 필요한 ‘도입 초기의 실험적 제도’로 진단함(본 주제는 7월 23일 개최 예정인 International Summer Seminar에서 심화 논의 예정).

사. 한국 IP 소송의 진화: 사건관리 및 AI 활용

- 특허법원은 2025년 소송 초기 ‘**절차협의(Case Management Conference)**’를 도입해 예측가능성 및 당사자 만족도를 높였음.
- 한국 특허법원의 이원 구조상 6~10개월 내 결론이 나는 심결취소 사건보다는

증거가 많은 침해 관련 민사항소심 사건에서 초기 사건관리의 실익이 훨씬 크게 나타남.

- 특히 이지영 고법판사의 담당 재판부가 ‘**AI 활용 시범 재판부**’로 지정되어 당사자 동의 하에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송 초기 절차협의 단계가 이러한 동의 확보와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데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음. Lim 교수는 이 혁신적인 노력을 대외에 널리 알릴 것을 권고함.

2. 질의응답 (답변: Lim 교수)

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

- 미국 대법원은 필수설비이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음(스칼리아 대법관이 Trinko 판결을 통해 필수설비이론에 대해 ‘인정할 필요도, 부인할 필요도 없다’고 밝힘). 이는 시장에서 성공한 기업에게 경쟁자를 도와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미국 법원의 거부감을 반영함.
- 반면 유럽은 상대적으로 더 사회주의적(socialist) 접근을 취함.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한 것은 타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 이 방식은 도덕적인 면이 있으나, 혁신가와 위험 감수자(risk takers)들의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
- 또한 아직 AI 개발자에 대한 반독점 적용 사례는 없으며, 운영체제(OS) 시장과 달리 현재 생성형 AI 시장은 ChatGPT, Claude, Gemini 등 다수의 거대 모델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므로 특정 기업이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 단순히 기업의 규모가 크고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독점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독점 위반이 되려면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구체적인 반독점적 침해(antitrust injury)가 입증되어야 함.



나. 법원의 글로벌 로열티 설정 여부에 관한 질문

- Unwired Planet 사건을 판결한 콜린 버스 판사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임의로 글로벌 요율을 설정한 것이 아님. 애초에 당사자들이 글로벌 FRAND 기준을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약속)한 상태에서 발생한 계약 위반 분쟁(contractual dispute)을 사법적으로 해결해 준 것임.
- 표준화기구에 표준필수특허로 선언된 글로벌 기술이고 라이선스가 글로벌이면 글로벌 구제가 자연스러움. 다만 ‘IP는 국내적, 비즈니스는 국제적’이라는 괴리가 있어 중재 및 조정이 글로벌 해법으로서 유용함. 향후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위해 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일종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AI의 본질에 관한 질문(기술인가, 문명인가?)

- AI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과거 인터넷이나 전기의 발명 이상으로 인류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huge change of civilization)’으로 보아야 함.
- 대량 실업 우려와는 달리, 과거 계산기나 PC,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처럼,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더 많은 일이 창출될 것임.

라.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 현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인간의 직접적인 참여 과정을 과도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보수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음.
- 과거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두고 대립했던 논란(단지

버튼만 누르는데 저작권이 있는가)과 유사하며, 오늘날 셀카나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하듯 AI 산출물 역시 결국 시장이 그 가치를 결정할 것임.

- 국가별로는 중국이 유연하고 빠르게 인정하는 편이며, 유럽은 인간 창작자를 중시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매우 보수적임. (본 주제는 올해 11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 심화 논의 예정)